

 <p>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p>  <p>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36개소 올해 12월 1일부터 찾아갑니다.</p>	<h2>보 도 자 료</h2>		 <p>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p>
	배포일시	2015. 12. 30(수) 총 23매(본문 2, 붙임 21)	
	·공간정보제도과장 고영진, 사무관 손찬호, 주무관 전우진 ·☎ (044)201-3478, 3482, 4728		
보 도 일 시	2015년 12월 3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일사편리”완성

-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하기 위하여, 지난 12년부터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완료하고,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16. 1.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사편리” 서비스는 1차적으로 지난 ‘14. 1. 18일부터 시행 하였으나, 그때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해 왔고, 이번에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함으로써 비로소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서비스하게 된 것이다.

*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

□ “일사편리”는 1차 서비스 기간(‘14. 1. 18 ~ ‘15. 12월)동안 누적 열람·발급 건수가 300만건(1일 평균 4,700건)을 넘어섰고, 특히 온라

인을 통한 열람·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건(1일 평균 1,150건)에서 금년에는 190만건(1일 평균 3,500건)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 행자부, LH공사 등 118개 기관 169개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동산정보 활용

○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 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완성하는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찬호 사무관(☎ 044-201-3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8종 부동산 공부 현황

분야	부동산 공부	관련법	관련부처	운영	비고
	18종	5개 법	2 부		
지적 (7종)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공유지연명부 4) 대지권등록부 5) 지적도 6) 임야도 7) 경계점좌표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물 (4종)	8)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9)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10)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11)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시·도 사군구	
토지 (1종)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가격 (3종)	1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등기 (3종)	16) 등기부등본(토지) 17) 등기부등본(건물) 18)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부동산등기법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등기소	

부동산종합증명서(현행)

교유번호	2717010200-1-0003-0169			건축물명칭		장번호	4 - 1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북비산로7길 33-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169)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표제
토지 표시 (관련필지가 다수일 경우 별도 발급)				건축물 표시 (* 표시 항목이 총괄일 경우 합계를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대지면적(㎡)	119
대표	비산동	3-169	대	76	2014.01.01	*건물면적(㎡)	69.96
관련	비산동	3-170	대	43	2014.01.01	*연면적(㎡)	270.96
		-이 하	여	택 -		*경축율(%)	58.78
						*용적률(%)	227.63
						*건축수	층수(지상/지하)
						*주차장대수	*부속건물(동/㎡)
						*허가일자	1994.09.08
						*삭감일자	1994.09.12
						*사용승인일자	1995.02.14
							가격 주택가격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합합건물일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번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소유 구분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소유 구분
3-169	2011.06.17	이태수 외 2인	개인	대구광역시 중구 통인동1가 312-6			
토지이용계획도면 [등록축적 1:1200 / 출력축적 1:1200]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해당없음]			
				문화재보호법령 검토대상구역(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건축후회선 지정여부는 건축주택과에 별도 확인 바랍니다)			
				타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해당없음]			
				추가기재확인 [해당없음]			
				토지이용규제 [해당없음]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09월 0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부동산종합증명서(개선)

교유번호	2717010200-1-0003-0169			건축물명칭		장번호	5 - 1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북비산로7길 33-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169)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표제
토지 표시 (관련필지가 다수일 경우 별도 발급)				건축물 표시 (* 표시 항목이 총괄일 경우 합계를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대지면적(㎡)	119
대표	비산동	3-169	대	76	2013.01.01	*건물면적(㎡)	69.96
관련	비산동	3-170	대	43	2013.01.01	*연면적(㎡)	270.96
		-이 하	여	택 -		*경축율(%)	58.78
						*용적률(%)	227.63
						*건축수	층수(지상/지하)
						*주차장대수	*부속건물(동/㎡)
						*허가일자	1994.09.08
						*삭감일자	1994.09.12
						*사용승인일자	1995.02.14
							가격 주택가격
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 (합합건물일 경우 건축물)				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 (합합건물일 경우 건축물)			
구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주소	변동일자	성명	주소
토지	2011.06.17	소유권이전	이태수	대구광역시 중구 통인동1가 312-6			
건축물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구분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무(토지)							
유/무(건축물)							
토지이용 계획 [해당없음]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09월 0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개선사항]

- (용어혼선 재정의) 변경일자 등 용어 통일 및 토지 소유권, 대지권 등 사용자 혼선이 발생하는 용어를 조정하고 “원” 등 정보단위 추가
- (도면정보의 위치 변경으로 가독성 확보) 첫 장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지적도와 한면으로 이동배치하여 도면 가독성을 높임
- (정보의 배치 순서 등 일관성 확보) 각 정보는 최신 정보가 가장 상단으로 오도록 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열함
-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표시 강화) 민원인에게 18종 개별공부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보해석 오류 방지
- (등기정보 단계별 발급) 등기 권리사항 요약을 우선 적용하고, 정보품질 및 서비스 시간 등에 대한 검증이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

참고 3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15.6.4.>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소재지					
토지 표시					
지목	면적(m ²)	이동일자	이동사유		
소유자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주소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구분	소유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유 / 무					
개별공시지가 연혁 (원/m ²)					
기준일자					
공시지가					
토지이용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	--	-------	--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변동원인	등록번호		

토지 표시 연혁

지목	면적(m ²)	이동일자	이동사유	지목	면적(m ²)	이동일자	이동사유

토지 소유자 연혁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변동원인	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	--	-------	--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p>*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p>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	--	-------	--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부호	좌표		부호	좌표	
	X	Y		X	Y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유무	
-------	--

안 내 사 항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유 의 사 항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발체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 3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3서식] <개정 2015.6.4.>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 표시 (관련 필지가 다수일 경우 별도 발급)					건축물 표시 (*표시 항목이 총괄일 경우 합계를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m ²)	개별공시지가 (원/m ²)		* 대지면적(m ²)	* 주용도	
					기준일자	공시지가	* 건축면적(m ²)	주구조	
							* 연면적(m ²)	지붕	
							* 건폐율(%)	높이	
							* 용적율(%)	층수(지상/지하)	
							* 건물수	* 부속건물(동/m ²)	
							* 허가일자	* 가구/세대/호	
							* 착공일자	* 주차 대수	
							* 사용승인일자	* 승강기	

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물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기재하지 않음, 토지는 건축물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작성됨)					
구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주소
토지					
건축물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구분	소유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유/무(토지)				
유/무(건축물)				

토지이용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적인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 표시 연혁				건축물 변동 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변동내역

토지 소유자 연혁			건축물 소유자 연혁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변동원인	등록번호		

가격 연혁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표시)										
개별주택가격 (원)	기준일자									
	주택가격									
대표지번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일자									
	공시지가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건축물 현황도면 [배치도]

도면축척		도면작성자	
------	--	-------	--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	--------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부호	좌표		부호	좌표	
	X	Y		X	Y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안내사항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유의사항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 4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개정 2015.6.4.>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토지 표시 (대지권 비율)						1동 건축물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m ²)	대지권 비율	개별공시지가 (원/m ²)		* 연면적(m ²)		* 주용도			
						기준일자	공시지가	* 부속건물(동/ m ²)		주구조			
								층수(지상/지하)		* 사용승인일자			
건축물 표시 (전유/공용 부분)													
								주/부	전유/공용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토지(대지권), 건축물 소유자 현황													
구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주소							
대지권													
건축물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구분	소유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유/무													
토지이용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층별 현황									
주/부	층명칭	층별구조	층별용도	면적(m ²)	주/부	층명칭	층별구조	층별용도	면적(m ²)

토지(대지권) 공유 현황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변동원인	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토지 표시 연혁				건축물 전유 변동 연혁		
지목	면적(m ²)	이동일자	이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변동내역

토지부분 소유자 연혁			건축물 전유부분 소유자 연혁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변동원인	등록번호		

공동주택가격 연혁 (원)										
기준일자										
주택가격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	--------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건축물 현황도면 [평면도]						

도면축척		도면작성자	
------	--	-------	--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건축물 동명 칭		호명칭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부호	좌표		부호	좌표	
	X	Y		X	Y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안내사항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유의사항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